

## 결혼 · 이혼 · 출생 · 사망

일본에서는 외국인도 결혼 · 이혼 · 출생 · 사망 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.

또한 혼인신고 · 이혼신고 · 출생신고 · 사망신고 등의 신고를 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시(구청촌)청에서 발급신청을 해 주십시오.



### ◆ 혼인신고

일본에서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출신국에 따라 다르며, 외국에서 혼인을 할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과에 문의해 주십시오.

① 혼인요건 구비증명서

(한국정부, 일본내 한국대사관 등이 발행한 배우자가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
②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것 (여권 등)

③ 번역본

(①, ②의 서류가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. 또한 말미에 번역자의 주소를 기입하고 서명하여 주십시오.)

④ 혼인신고서 (증인(성인 2명)의 서명이 필요합니다.)

### ◆ 이혼신고

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일본인 배우자와의 이혼은, 일본의 법률에 의해 가능합니다. 외국인 부부가 일본의 법률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.

### ◆ 출생신고

부모(혼인 중)가 외국인이라도 일본 국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민과에 출생 신고를 해 주십시오. 출생 시에 부모(혼인 중)의 한 쪽이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아이의 재류자격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(특별영주자는 시민과)에 문의해 주십시오.

### ◆ 사망신고

외국인도 일본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후 7일 이내에 호적법으로 정해진 신청인이 시민과에 사망신고를 해 주십시오. 신청인의 자격 등은 시민과에 문의해 주십시오.

결혼 · 출생 · 이혼 · 사망 등 호적신고에 관한 문의

다자이후시청 시민과 TEL : 092-921-2121 E-mail : shimin@city.dazaifu.lg.jp